

[VIP해외순방, 4.13 총선]

취약시기 감찰 기강감사 결과보고

- 감사기간: 2016. 4. 4.(월) ~4. 5.(화)/ 4. 11.(월)~4. 12.(화) 4일간
- 감사인원: 4명
- 지적사항: 2건

2016. 4.

목 차

I 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목적	1
2. 감사대상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중점 사항	2
II . 감사결과	3
1. 총평	3
2. 점검 결과	3
3. 주요 실적	4
4. 분야별 지적사항	5
5. 감사자 의견	6
III . 처분요구 현황	6
IV . 기타사항	7
【붙임】 점검대상기관 현황	8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취약시기(VIP 해외순방 & 4.13. 총선, 전국 경계태세 강화)에 공사 임직원에게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직원의 비리·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감사대상

○ 대상기관: ☆☆지역본부 ★★지사 등 6개 본부, 9개 지사

* 4. 13. 총선 출마자와 관련된 직원의 소속기관, 노후사육 대상

【첨부】 점검대상 기관 현황 참조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기 간: 2016. 4. 4.(월) ~ 4. 5.(화) / 4. 11.(월) ~ 4. 12.(화) 4일간

○ 인 원: 4명(연인원 6명)

일자	감사 반	감사인	감사일수	감사기관	비고
합계	총괄	감사2부장	4	9	
4. 4. ~ 5.	1반	팀장 ○○○ 팀장 ●●●	2	3	
4. 11. ~ 12.	1반	팀장 ○○○ 팀장 ◎◎◎	2	3	
	2반	팀장 ●●● 팀장 ◇◇◇		3	

4. 감사중점 사항

이번 감사는 ‘VIP해외순방’ 및 ‘4.13. 총선’, ‘청와대(VIP)의 전국 특별 경계태세강화 지시’ (3. 24)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함.

○ 복무 등 위반행위

- 기본 복무 사항* 준수·관리 여부
- * 출퇴근, 무단결근, 허위출장, 외출, 특근, 휴가, 무단이석, 중식시간 준수 등
- 근무시간 내·외 음주운전 및 도박, 사행성 행위
-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행위(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등)
- 각종 보안(문서, 정보) 관련 사항
-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위반 행위 등

○ 4. 13. 총선 관련

-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 등에 참여하는 행위
-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방치 사례
- 특정 출마자에게 내부 자료의 제공 및 유출행위
- 기타 품위손상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

○ 경계태세 강화 관련

- 각 기관별 비상연락망* 최신화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태세 여부
- * 전 직원 비상연락망, 민방위대원 편성표, 예비군 편성표 및 소방서·경찰서 등 비상 시 지원요청이 필요한 인근 기관들의 비상연락망

○ 시설안전 점검

- 장마철 대비 노후 된 사옥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

II. 감사결과

1. 총평

대부분의 수감기관 직원들이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직원비상연락망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민방위대편성표, 예비군편성표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문서보안과 전기·소방 안전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.

2. 점검결과

< 잘된 점 >

○ 복무 및 선거관련

- 무단이석, 지각, 조기퇴근 및 근무시간 중 음주·도박 등의 사례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- 근무 중 선거개입행위에 따른 무단 이석이나 업무 처리 지연 등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위반행위를 하지 않음.
- 공용재산(업무용 임차차량)의 사적이용 행위를 하지 않음.

○ 경계태세 강화 관련

-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이 최신화 되어 있음.

○ 시설안전관리 관련

- 점검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관리 상태가 양호 함.

< 미흡한 점 >

○ 복무 및 선거관련

- 일부 기관에서 사원증 및 문서방치 사례가 있음.

○ 경계태세 강화 관련

- 대상기관(9개) 모두 민방위대편성표·예비군편성표 및 소방서·경찰서 등 비상 시 지원 가능한 인근 기관들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지 않음.

○ 시설안전관리 관련

- 시설점검 내용이 일부 전문적이며 직원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‘전기안전점검’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,
- 시설안전점검을 위한 점검표가 현재 ① 시설물안전점검표 ② 전기 안전 자가점검표 ③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총 3가지로 되어 있으며,
- 일부 점검내용은 상호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검항목과 적합성 판단이 모호한 항목도 있어서 대부분 사실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3. 주요 실적

(단위 : 건)

구분	총괄 (계)	행정상조치				재정상조치		신분상조치(인원)			현지 처분	제도 개선	모범 사례
		통보	시정	개선	권고	회수	지급	징계	문책	고발			
건수 (인원)	2 (0)	0	0	1	1	0	0	0 (0)	0 (0)	0 (0)	0	0	0

4. 분야별 지적사항

□ 처분요구

○ 전기안전점검 소홀

- 매월 4일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기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,
- 일반적으로 서무업무 담당자가 매월 실제로 점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‘전기안전 자가점검표’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표시(○)를 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함.

○ 점검 내용의 중복 및 전문성의 한계로 인한 형식적 점검

- 매월 4일 실시하고 있는 시설안전점검을 위한 점검표가 현재
① 시설물 안전점검표 ② 전기안전 자가점검표 ③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3종이며 일부 점검항목은 상호 중복되어 있음.
- 시설물 안전점검표의 점검 내용 중 일부는 전문용어* 사용 및 점검방법, 점검사항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**이 있으며,
- 2015.8. 배부된 소방안전관리 매뉴얼에 있는 ‘소방시설 외관 점검표’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.

* 코너비드, 루프드레인, 스틸그레이팅, 카스토퍼, 드레인관, 축열조 등

** 복층 유리내부 공기층 변색 여부, 보일러 관수 및 수질 상태, 연료소모량 점검 여부, 청관제 및 소금 투입상태, 가스설비의 회로표시 및 관리상태, 냉동설비의 축열조, 열교환기, 순환펌프 동작상태 등

5. 감사자 의견

- 모든 수감기관의 직원들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양호한 근무 자세를 보이고 있었으며,
- 4.13. 총선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 참여 및 선거를 핑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었음.
 - * 복무위반 행위나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선거일(4. 13.) 전에 지속적인 교육과 사전 예방 점검을 병행하였음.
- 그밖에 보안(문서, 정보, 사원증)이 미흡한 기관은 현지 지도에서 연내 재점검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음.
- 공사 사옥 총 △△△동 중 자가 사옥이 △△△동 이며 이중에서 20년 이상(1997년 이전)된 노후 사옥(자가)이 108동으로 전체 자가 사옥의 59%를 차지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함.
-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매월 점검하고 있는 중복된 점검표 3종에 대해 사실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·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요구 하고자 함.

Ⅲ. 처분요구 현황

관 계 기 관	내 용	처분요구 등 종류		비고
		행정상	재정상	
경 영 지 원 실	사옥 전기안전점검 소홀	개선		
	사옥의 시설물 안전점검표 운영 부적정	권고		

IV. 기타사항

- (지적사항) 해당 부서에 처분 요구
- (감사결과)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-감사시스템 등록, 홈페이지 경영공시

【첨부】 점검 대상기관 현황

○ 기간: 2016. 4. 4. ~ 4. 5. / 4. 11. ~ 4. 12.(4일간)

일자	점검 기관	정원(명)	감사 반	비 고
계	9개 기관	177	2개 반	
4. 4.(월)	◆◆ 지역본부 □□ 지사	19	1반	
	■ ■ 지역본부 △△ 지사	14		
4. 5.(화)	▲▲ 지역본부 ▽▽ 지사	18		
4. 11.(월)	▼▼▼▼ 지역본부 ◁◁ 지사	16	1반	
	▼▼▼▼ 지역본부 ◀◀ 지사	12		
	▷▷ 지역본부 ▶▶▶▶ 지사	19	2반	
	▷▷ 지역본부 ♠♠♠♠ 지사	32		
4. 12.(화)	♠♠ 지역본부 ♡♡ 지사	22	1반	
	☆☆ 지역본부 ★★ 지사	25	2반	

붙임 1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. 끝.

감 사 개 선

제 목 사옥 전기안전점검 소홀

관 계 기 관 ○○○○실

내 용

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 제1항에 “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(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다.” 고 되어 있고,

「같은 법」 제108조(과태료) 제2항 제5호에 제66조 제1항에 “점검(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.)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” 고 되어 있다.

또한, 「전기사업법시행규칙」 제35조의2(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) 제1항에 “한국전기안전공사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(이하 “정기점검“이라 한다)을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.” 고 되어 있다.

따라서 본사에서는 「시설물 안전점검(화재예방 등) 철저(경영지원실-2063: 2013. 4. 1., 경영지원실-3979: 2014. 5. 26.)」를 통하여 자가 건물의 경우 2013년도에는 연 1회, 2014년도부터는 3년에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 점검을 받도록 지시하였다.

[한국전기안전공사 수검 현황]

대상기관	점검실적	점검 결과
☆☆지역본부 ★★지사	점검(2015. 3. 27.)	- 에어컨 및 온풍기 실외기 접지시설 미시공 - 제3종 접지공사(100Ω이하)를 시공하여 사용바람
▷▷지역본부 ▶▶▶▶지사	-	
▷▷지역본부 ♡♡♡♡지사	-	
♠♠지역본부 ♥♥지사	점검(2014. 11. 20.)	- 이상 없음
◆◆지역본부 □□지사	-	
▼▼▼▼지역본부 <<지사	-	
▼▼▼▼지역본부 ◀◀지사	-	
■ ■ 지역본부 △△지사	-	
■ ■ 지역본부 ▽▽지사	-	

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금 번 복무점검 대상 9개 기관 중 2개 기관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으며 나머지 7개 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을 의뢰한 실적이 없었으며, 일부 기관은 3년에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기관도 있는 등 지사 사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장은 일선 기관의 전기안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기안전점검 계약을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우리 공사 본사 간에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점검 대상·시기 및 기간을 ‘화재예방 안전수칙’에 정확히 명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고 사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감 사 권 고

제 목 사옥의 시설물 안전점검표 운영 부적정
 관 계 기 관 ○○○○실
 내 용

공사에서는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관별 안전점검을 위한 ‘화재예방 안전수칙’ 및 ‘전기시설 자가점검표’ 등을 일선에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다

이에 따라서 자가 건물의 경우 전기사용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, 2014년도부터는 3년에 1회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전기안전 점검 정책을 수립·운영하고 있다.

그리고 <표. 시설물 안전점검 지시 현황>과 같이 공사 사옥(시설물 포함)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전점검 시기는 안전점검의 날(매월 4일)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.

< 표. 시설물 안전점검 지시 현황 >

구분	근거	적요
시설물 안전점검(화재 예방 등) 철저	경영지원실-2063(2013.4.1.)	전기안전 자가점검표(12개 항목): 매월 화재예방 안전수칙(1년에 1회 전기안전점검 지시)
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통보	경영지원실-1827(2014.3.3.)	시설물 안전점검표(건축/토목/조경/설비/소방/전기/통신영역): 매월 4일 실시(안전점검의 날)
시설물 안전점검(화재 예방 등) 철저	경영지원실-3979(2014.5.26.)	전기안전 자가점검표(12개 항목): 매월 화재예방 안전수칙(3년에 1회 전기안전점검 지시)
장마철 대비 시설물 관리 철저	경영지원실-5328(2014.7.10.)	장마철대비 시설물 점검표(7월~10월)
동절기 시설물 및 시설 공사 관리 철저	경영지원실-10139(2014.12.16.)	동절기 시설물 점검표(점검시기 없음)
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	경영지원실-7813(2015. 8.27.)	소방안전관리 매뉴얼(소방시설 외관점검표),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배포

그러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설물 안전을 위해 배부한 안전 점검표가 총 5종이며 이중에서 ‘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표’와 ‘동절기 시설물 점검표’는 시기별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부분의 점검을 별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 ‘전기안전 자가점검표’, ‘시설물 안전점검표’,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‘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검내용,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검 항목, 점검 사항이 너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일선에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으로 통합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장은 ① 공사 사옥의 시설물 안전점검표에 중복된 점검 항목 및 분산되어 있는 3종의 점검표를 통합하고 ②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한 점검항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개선하시기를 권고합니다.